

## 1. 사고의 개요

### 1.1 사고(事故)란?

사고(事故)란 사전적 의미로 “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” 또는 “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”을 말한다. 또한, 하인리히(H. W. Heinrich)의 도미노 이론의 재해발생은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결함의 시작으로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, 그 사고로 인해 재해(상해)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.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발생된다.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며, 무사안일주의(無事安逸主義)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러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, 사고 발생 시 재해(상해)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(유해·위험요인 제거)가 필요하다.

### 1.2 중대산업사고란?

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,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.

✓ 재해(災害)란?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체상의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구 분	산업안전보건법	중대재해처벌법	
중대 재해	<p>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</li> <li>▪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</li> <li>▪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</li> </ul>	<p>〈중대산업재해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</li> <li>▪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</li> <li>▪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 성증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</li> </ul>	<p>〈중대시민재해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</li> <li>▪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</li> <li>▪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</li> </ul>

## 2.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

- ① 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렌,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.
- ②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소방서, 경찰서,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, 관할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.
- ③ 신고내용은 언제, 어디서,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와 피해 상황 등 사고정보를 포함한다.
- ④ 가스,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한다.
- ⑤ 급성증독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.
- ⑥ 질식사고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(송기마스크)를 착용한다.
- ⑦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,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.
- ⑧ 공사장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 대피로를 찾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.
- ⑨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가 붕괴위험을 조심해야 한다.
- ⑩ 공사장 밖에 있는 근로자 및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.
- ⑪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한다.

✓ 사고 상황별 초기 대처요령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▶ 감전 : 즉시 전원 차단, 통전 차단여부 확인         | ▶ 화재 :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,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|
| ▶ 질식 : 작업중지,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    | ▶ 기계재해 : 재해 발생 기계 정지, 2차 피해 방지          |
| ▶ 무너짐 : 해당 공정의 기계·장비 정지, 2차 피해 발생방지 | ▶ 유해물질 누출 : 밸브 차단 후 신속히 대피              |

〈도미노 이론〉



## 2.1 폭발 · 화학적 사고

물질의 상태변화(고체, 액체, 기체)등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적인 연소현상을 말한다.

사고대비 훈련방법	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자의 대피를 위한 비상집결지 지정</li> <li>대피 시 인원파악 방법 훈련</li> <li>사업장 주변 취약시설 파악(병원, 학교 등)</li> <li>사고발생시 연락방법,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</li> <li>소방서, 경찰서, 관할지자체 등과 훈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내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</li> <li>추가적인 폭발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</li> <li>안전취약계층(여성, 고령자, 장애인, 외국인)의 경우 동료 작업자와 함께 대피</li> <li>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에 대하여 비상연락망 가동</li> <li>소방서, 경찰서, 관할지자체에 협조 요청</li> </ul>
신고방법	비상조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, 관할지자체에 신고</li> <li>언제, 어디서,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, 피해상황 등을 정확하게 신고(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화학물질 현황 및 특성을 자세히 설명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스, 위험물질 공급 뱀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</li> <li>공기호흡기(송기마스크)를 착용 후 인명구조 활동 실시</li> <li>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통제</li> </ul>
사고수습 및 사후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장에 출동한 소방관,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</li> <li>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량, 저장위치, 저장방법, 물질특성 등을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설명</li> <li>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장비 착용</li> <li>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</li> <li>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</li> </ul>

## 2.2 질식 · 중독 사고

산소결핍(공기 중 산소농도가 18% 미만인 상태)의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물질의 산화 또는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질식 · 중독위험을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.

밀폐공간 내 작업요령	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작업 시 작업장 출입구에 작업 종임을 표시</li> <li>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기간 내용, 연락처 등을 기록</li> <li>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후 출입</li> <li>작업 중 환기를 실시하고 산소농도를 수시 측정</li> <li>외부에 감시인 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· 중독사고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119나 회사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행동</li> <li>구조를 위해 밀폐공간에 출입 시 반드시 환기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(송기마스크)를 착용</li> <li>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, 적절한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림</li> </ul>
신고방법	사고수습 및 사후처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</li> <li>사고발생 내용 및 피해상황 등 파악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명구조 시 호흡유무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</li> <li>현장에 출동한 소방관,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</li> </ul>



## 2.3 전기화재 사고

전기가 발화원이 되는 화재로 주로 전로나 전기기계기구의 이상과열, 누전에 의해서 또는 정전기 불꽃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.

전기 취급자 작업요령	사고 발생시 대처요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정격용량 사용</li> <li>▶ 사용용기에 적합한 규격 전선을 사용, 노후 된 것은 교체 사용</li> <li>▶ 스위치, 배전반 등 정기점검 실시</li> <li>▶ 대용량 전기기구에는 배선을 분리, 배선별로 누전차단기 설치</li> <li>▶ 배선의 피복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</li> <li>▶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기</li> <li>▶ 배전반 내의 먼지, 금속가루 등 분진을 제거</li> <li>▶ 전기기기의 전기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전선 사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“불이야!”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함</li> <li>▶ 전기공급차단을 위해 전기 개폐기를 먼저 차단</li> <li>▶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대피</li> <li>▶ 대피시 젖은 수건 또는 담요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대피</li> <li>▶ 대피시 화재 진압용 물에 의한 감전주의</li> <li>▶ 사업장 내 작업인원 및 대피인원을 파악, 추가 붕괴우려 확인</li> </ul>
신고방법	사고수습 및 사후처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</li> <li>▶ 한국전력공사(123), 한국전기안전공사(1588-7500)에 신고</li> <li>▶ 사고발생 내용 및 피해상황 등 파악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경찰관, 소방관 등의 유도 안내에 질서 있게 이동</li> <li>▶ 안전취약계층(여성, 고령자, 장애인, 외국인)의 경우 동료 작업자와 함께 대피</li> <li>▶ 사고수습 활동을 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함</li> </ul>

## 2.4 구조물 무너짐 사고

지반의 붕괴, 구축물의 무너짐 또는 토석의 떨어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.

신고방법	사고 발생시 대처요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</li> <li>▶ 사고발생 내용 및 피해상황 등 파악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전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하는 것이 중요</li> <li>▶ 징후 포착 즉시 구조물 내부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</li> <li>▶ 구조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함</li> <li>▶ 사업장 내 작업인원 및 대피인원을 파악, 추가 붕괴 우려 확인</li> </ul>
사고수습 및 사후처리	비상조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경찰관, 소방관 등의 유도 안내에 질서 있게 이동</li> <li>▶ 안전취약계층(여성, 고령자, 장애인, 외국인)의 경우 동료 작업자와 함께 대피</li> <li>▶ 사고수습 활동을 하는 인원은 적정 보호장비를 착용함</li> <li>▶ 안전지역으로 이동 후 건강상태 확인, 오염물 세척 등을 실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정된 대피 장소(안전한 장소)로 이동</li> <li>▶ 사고현장의 붕괴된 자재·파편은 건드리지 말고 대피</li> <li>▶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함</li> <li>▶ 설불리 구조하러 사고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이 도착 할 때까지 기다림</li> </ul>

### ✓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



## 2.5 사업주 및 근로자의 대처요령

사업주	근로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</li> <li>▶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</li> <li>▶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</li> <li>▶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(상급자)에게 보고</li> <li>▶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 등에 신고</li> <li>▶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보존</li> </ul>

## 3.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운영절차

안전보건과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✓ 비상조치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

- ▶ 위험요인별로 발생 가능한 재해 형태(화재, 누출, 끼임, 떨어짐 등)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 (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, 위치, 공정, 작업내용 등을 검토)
- ▶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(설비결함, 운전원 조작 미숙, 비정상 운전상태, 기상상황 등 여러 재해 원인을 가정)
- ▶ 사업장(공장·현장)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

## 3.1 책임 및 권한

- 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업무에 대해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② 관리부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.
  - ✓ 비상사태 발생 시 부서간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 및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
  - ✓ 비상사태의 관련 기관에 통보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응 훈련계획을 수립, 시행, 평가, 개정
  - ✓ 대피로, 비상구, 비상등, 소화기 등 비상 관련 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
  - ✓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, 개정 및 공개
- ③ 각 부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.
  - ✓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안전보건 비상사태를 식별,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,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
  - ✓ 모기업에서 시행하는 비상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
  - ✓ 대피로, 비상구, 비상등, 소화기 등 비상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, 유지, 보수, 관리
  - ✓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지원, 현장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

## 3.2 운영절차

- ①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및 대책을 마련한다.
  - ✓ 회사의 모든 조직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잠재적인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유지해야 한다. 운영 및 관리 절차의 검토 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.
    - 사고 재발 가능성
    - 사고로 인한 화재 및 폭발과 같은 2차 재해 발생 가능성
    - 사고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
  - ✓ 긴급대책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를 고려한다.
    - 긴급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



- 핵심 요원의 목록
- 긴급 활동의 세부 사항
- 내부 및 외부에 대한 긴급 상황 통보계획
- 2차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 및 화재, 폭발 등의 사고 시 취해야 할 조치
- ✓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 내용을 작성한다.
  -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, 장비 보유현황
  - 사고발생 시 각 부서 ·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
  -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
  -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· 훈련계획
  -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, 응급조치 절차
  -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 · 홍보 방안
- ✓ 비상사태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다.
  - 유해위험물질 누출
  - 화재, 폭발
  - 감전, 끼임, 떨어짐, 부딪힘, 무너짐, 중독, 질식, 뇌졸중, 심장발작 등 작업장내 · 외 재해
  - 교통사고
- ✓ **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관리 목록 예시**

연번	부서	공정	설비, 장치명	유해 · 위험 물질 (주1)	재해 유형 (주2)	원인 (주3)	비상 상황 (주4)	중요도 (주5)	피해 가능 범위	교육, 훈련 주기
1	생산 1팀	A공정	B설비	시안화 수소	누출	이상 압력 상승	A공정 B설비 이상 압력 상승으로 인한 균열로 시 안화수소(독성물질) 누출	A등급	반경 1km	1회/년

(주1) 해당 설비에서 비상상황의 원인이 되는 물질 기재  
 (주2) 누출, 화재, 폭발, 정전, 유밀리티 공급중단,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 
 (주3) 균열, 부식, 압력상승, 폭주반응, 정전, 정비 작업 등  
 (주4) 공정, 설비, 유해위험물질, 재해유형, 원인 등을 종합하여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 
 (주5) A, B, C, 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

②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✓ 대응훈련 일반 절차
  - 관리부서장 및 각 부서는 비상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에 따라 ○회/년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(실시시간, 사진)를 기록 · 보존한다.
  -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 ·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 · 보완한다. 그 내용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심의 · 의결한다.
  - 비상훈련 실시보고서에는 훈련일, 참가자, 측정자, 목표시간, 실시시간, 상황별 업무,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✓ 수급업체 주관 비상훈련
  - 관리부서장은 수급업체에서 실시하는 정기적 훈련에 수급업체의 지침에 따라 현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  - 수급업체, 소방서 합동 화재 훈련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.
  - 관리부서장은 비상훈련 실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
  -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은 비상사태의 종류와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범위에 따라 유사한 등급 및 종류별로 구분한다.

③ 모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✓ 관리부서장은 화재, 감전 등에 대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반기 1회이상 자체훈련계획의 수립 및 그 결과를 평가한다.
- ✓ 현장관리감독자는 자체훈련을 실시한다.

#### ✓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 평가사항

- ▶ 비상시 구성원의 역할, 책임 및 권한의 적절성 및 실제 작동 여부
- ▶ 재해 발생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과 절차의 적정 여부
- ▶ 현장 조치사항(재해자 구호조치, 위험요인 제거 등)의 적정 실행 여부
- ▶ 대피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비 방법과 경로, 대피장소가 적정한지 여부

### 3.3 문서 및 기록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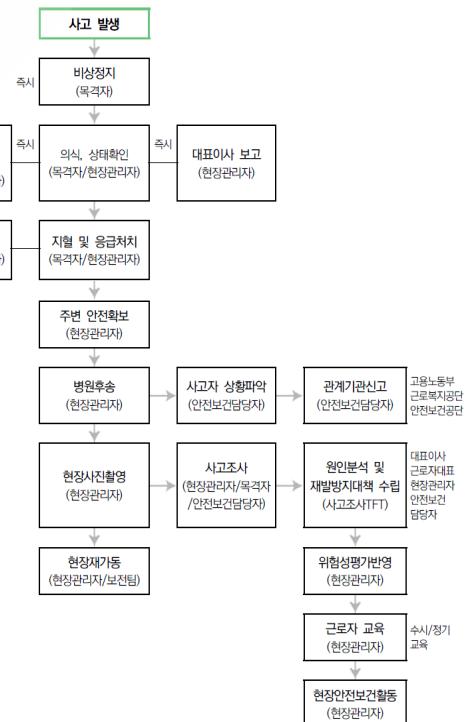
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.

- ✓ 발생일자(시간), 발생장소, 목격자
  - ✓ 사고개요 및 원인, 개선대책, 조치방법
- ②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.
- ✓ 훈련명, 훈련일시, 훈련장소, 훈련내용
  - ✓ 훈련결과, 목표시간, 실제 행동 관찰
- ③ 비상사태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.

#### 〈비상사태별 시나리오 예시〉

비상대응 시나리오(화재)		
비상 사태명	사상 및 물질분의 작업 화재발생	
발생 장소	OO길 OO설비 조업실	
발생 내용	사상 및 물질분의 물질작업 중 원 블더가 주변에 있던 미감재 등에 걸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내 설비에 화염이 퍼져불음.	
예상되는 피해 (안전보건영향)	기연성 소재가 있는 실내로 화재확대(호흡기, 화상피해 등)	
목표 시간	행동 요령	비 고
1분	최초발견자 : 비상경보발령(화재발신기) → 화재신고 (119, 시내****) → 사무실 보고(시내****)	
2분	분말소화기 이용 화재진압 및 작업자 대피	OO공장 앞OO명대피완료
2분	자체소방대 출동 → 소화작업 및 구호활동	
2분	환자발생시 응급처치 후 병원후송	
10분	화재 완전진압 확인후 화재 사후수습 및 리인가동 준비	산소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
2분	대피자 현장 복귀	

#### 〈비상대응 흐름도 예시〉



\* 자료출처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홈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

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홈 > 자료마당 > 안전보건자료실



결 재				

## 안전보건교육일지

교육일시	년 월 일 : ~ : ( 시간)				
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(산안법 시행 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)	교육과정	교육대상			교육시간
	□ 정기교육	사무직 종사 근로자			매분기 3시간 이상
		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	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		매분기 3시간 이상
			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		매분기 6시간 이상
	□ 채용 시 교육	일용근로자			1시간 이상
		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			8시간 이상
	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	일용근로자			1시간 이상
		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			2시간 이상
	□ 특별교육	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(제40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			2시간 이상
		별표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			8시간 이상
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			- 16시간 이상 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 -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		
교육인원	구 분	계	남	여	비 고
	대 상 인 원				【교육 참석자 명단】 참조
	참 석 인 원				
교육제목	사고 발생시 대처요령				
교육내용	1. 사고의 개요 2.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3.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운영절차				
교육장소 및 실시자	교육장소	직 명		성 명	

〈 교육 참석자 명단 〉

연 번	소 속	성 명	서 명	연 번	소 속	성 명	서 명
1				21			
2				22			
3				23			
4				24			
5				25			
6				26			
7				27			
8				28			
9				29			
10				30			
11				31			
12				32			
13				33			
14				34			
15				35			
16				36			
17				37			
18				38			
19				39			
20				40			